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 - 5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0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“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”에 의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
의 이해관계 회피 장치를 마련하였으며,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른 일
부 조문의 표현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 회피장치 마련(안 제5조제7항
및 제8항)

나. “기금운용관”을 “주민생활국장”에서 “청소행정과장”으로 변경 (안
제12조제2항) : 행정안전부 “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
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”에 의함

다. 그 밖에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주요 토의과제

“없음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3. 7. 4. ~ 7. 24 (제출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- 성별 구분, 성별 고정관념,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
음으로 원안에 동의함

4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.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.

법무팀 의견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 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, 안전행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,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건설에 따라”를 “운영으로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 중구·서울특별시 용산구·서울특별시 종로구·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”를 “마포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”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위 제1호부터 제3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금에 의거”를 “기금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으로, “구금고”를 “구 금고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을”을 “사람 중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위촉한 위원”을 “위촉위원”으로, “하되”를 “하되

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”를 “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”로, “전임자”를 “전임위원 임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⑧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6조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의”를 “위원회의 회의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작성 비치하여야”를 “작성하고 보관하여야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자원회수시설 업무관련팀장”을 “기금업무 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위원에 대하여”를 “위원에게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을

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매 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, “출납폐쇄후”를 “출납폐쇄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매 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운용계획서와”를 “기금운용계획안과”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6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②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.

③ 이 조례 제5조제5항의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<u>건설에 따라</u> 조성되는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운영으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중구·서울특별시 용산구·서울특별시 종로구·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</u>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납부하는 금액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마포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3.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, 체육시설,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
4. 위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과 관련된 계획·조사의 연구사업과 용역
5. 기금에 의거 설치된 시설의 유지·보수 및 관리·운영비 등
6. 기금 운용·관리에 따른 운영비, 홍보비 및 기타 활동비
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생략)

②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금을

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 제5조에 따른 -----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-----

5. 기금으로 -----

6. -----
----- 그 밖의 -----
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-----

구급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여야 하며,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

~ ③ (생략)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구의회 의원 3명

3.·4. (생략)

⑤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신설>

구급고-----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

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사람 중에서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 -----

3.·4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위촉위원 -----

- 하되 한 차례만 -----

⑥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-----
----- 전임
위원 임기 -----

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

<신 설>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·2. (생략)
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.

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⑧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

-----.

- 1.·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

-- 회의에 부치는 ----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

총괄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-----

-----.

② (생 략)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회의록 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10조(간사 등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, 서기는 자원회수시설 업무관련팀장이 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)

① (생 략)

②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자원회수시설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.

③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회의 회의-----

-----.

제9조(회의록 등) ① -----
-----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기금업무 담당팀장-----.

제11조(수당 등) -----

-- 위원에게-----
-----.

제12조(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기금관리장부의 비치) 기
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
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
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
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
기금의 적립·예치상황과 그 사
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
한다.

제14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
보고) 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
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
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
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
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
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
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마다
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
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
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
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
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
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

제13조(기금관리장부의 비치) --

----- 별지 제1호서식-----
----- 별지 제2호
서식-----

-----.

제14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
보고) ① ----- 회계연도-----

출납폐쇄 후 -----

-----.

② ----- 기금
운용계획안과-----
----- 회계연도-----

-----.

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기금
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
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
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

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준용한다.

<삭 제>

제16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
-----.

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나도환
연 락 처	02-3153-9233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 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중구·서울특별시 용산구·서울특별시 종로구·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</u>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납부하는 금액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마포자 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서울특별 시 중구·서울특별시 용산구·서울 특별시 종로구·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에서</u> ----- -----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